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57조의12 제1항)

- 1)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청렴서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청렴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제 등의 예외 사유(안 제57조의12 제2항)

- 1)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청렴서약서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사·공단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그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6조 전단 중 “제58조”를 “제57조의11, 제5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그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 ----- ----- ----- ----- -- 제57조의11, 제58조-----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기업지원과	
연 락 처	(044) 205-3983